

# 노상 등 장애물에 의한 통행 장애 방지에 관한 조례

## ■ 목적

노상 등 장애물에 의한 통행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청장 및 구민 등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, 구민 등이 공공 장소를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 ■ 구청장의 책무

경찰서나 관계 행정 기관, 지역 단체와 연계하여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합니다.

## ■ 구민 등의 책무

구민이나 사업자 (점포 등) 는 노상 등에 장애물이 되는 간판 및 상품 진열대 등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.

## ■ 지도

구청장은 노상 등 장애물을 설치·방치한 자에게 이를 제거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.

## ■ 권고

구청장은 지도를 받은 자가 노상 등 장애물을 설치·방치하고 있을 때는 즉시 제거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.

## ■ 제거·일시 보관

권고를 받은 자가 노상 등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구청장은 이를 제거하여 일시 보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※ 권고 시에 향후 노상 등 장애물을 반복 설치·방치하고, 제거하지 않은 상태라고 인정될 때는 신주쿠구가 이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요구합니다.

**안전하며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모두 함께 만듭시다.  
협력을 부탁드립니다.**

노상 등에 간판 및 상품 진열대 등의 물건을 허가 없이 설치·방치하면 통행의 장애가 되므로 보행자나 자전거가 부딪쳐 부상을 입거나 긴급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등 큰 불편을 끼칩니다. 노상 등 장애물을 **설치·방치하지 않도록** 합시다.



# 노상 등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는 지도·권고합니다 반복되는 경우는 신주쿠구가 제거·일시 보관합니다

노상 등 장애물을 설치·방치한 자에게 이를 제거하도록 지도·권고합니다.

노상 등 장애물이 반복 설치·방치되고,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신주쿠구가 이를 제거·일시 보관합니다.

일시 보관 동안에 부지 내의 공간에서 설치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주십시오.

지도



권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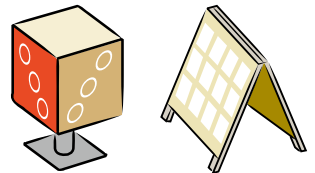
제거·일시 보관

※ 권고 시에 향후 노상 등 장애물을 반복 설치·방치하고, 제거하지 않은 상태라고 인정될 때는 신주쿠구가 이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요구합니다.

## 노상 등 장애물이란

공공 장소의 적정한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용이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것

- (예) ■길 위에 놓인 간판 등
- 길 위에 놓인 상품 진열대
- 집 앞 등의 길 위에 놓인 화분이나 플랜터



## 도로 위에 간판 등 물건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행위는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- |                |   |   |  |
|----------------|---|---|--|
| ■도로법           | 제 32 조 (도로의 점용 허가)<br>제 43 조 (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) | → | ※벌칙 (제 102 조)<br>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 엔 이하의 벌금 |
| ■도로 교통법        | 제 76 조 (금지 행위)<br>제 77 조 (도로의 사용 허가)        | → | ※벌칙 (제 119 조)<br>3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 만 엔 이하의 벌금 |
| ■도쿄도 옥외 광고물 조례 | 제 6 조 10 호 (금지 구역)                          | → | ※벌칙 (제 71 조)<br>5 만 엔 이하의 과태료                |

## 돌출 간판이나 벽면 간판은 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

건물에서 돌출하여 설치하는 ‘돌출 간판’ 이나 ‘벽면 간판’ 은 도로법·도쿄도 옥외 광고물 조례의 기준을 만족하고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분은 아래에 문의해 주십시오.

문의처  
신주쿠구 녹지토목부 토목관리과 점용계  
TEL 03-5273-3574(구청 본청사 7 층)

